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12. 27. ~ 2024. 2. 7., 2024. 5. 14.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별표 1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제2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2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4호 중 “제1호부터 제3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한다.

26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9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1호 중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13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24 제1호가목의 안전검사 대상란 중 “산업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산업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로 한다.

별표 25의 번호 3의 구분란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별표 29 제1호가목1)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측정대상 사업장”을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
문의 1명씩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번호 2 및 별표 25 번호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p>	<p>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 ----- ----- -----.</p> <p>1. ~ 13. (현행과 같음) <u>14. 혼합기</u> <u>15. 파쇄기 또는 분쇄기</u> ②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